

#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유의사항

## 1.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
구분	내 용
상품 특징	-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300만원 <sup>1)</sup> 또는 4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.2% 또는 16.5% <sup>2)</sup> 까지 (지방소득세포함) 세액공제 -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연금수령	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,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
연금수령한도	연금계좌의 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 × 120%
연금외수령	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
가입대상	제한 없음
납입한도	전 금융기관 합산 연 1,800만원 이내(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
세액공제	당해연도 납입액의 13.2% 또는 16.5% <sup>2)</sup>
보수, 수수료	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(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
계좌 이체	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
계좌 승계	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

1) 종합소득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.2억원) 초과시  
2) 종합소득 4,0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이하인 경우

## 2. 금융권역별 상품특징

구분	은행	증권사	생명보험	손해보험
상품	연금저축신탁	연금저축펀드계좌	연금저축보험	연금저축보험
납입방식	자유납	자유납	정기납	정기납
연금형태	확정	확정	중신, 확정	확정 (~ 25년)
예금자보호법	적용	적용되지 않음	적용	적용

## 3. 연금저축계좌 세제

구분	납입시	연금외수령시	연금수령*시
세제종류	소득·세액공제 혜택	기타소득세 (16.5%, 지방세포함)	연금소득세 (5.5~3.3%, 지방세포함) *의료비, 부득이한 사유 포함

- ①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. (소득세액공제확인서)
  - ②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제외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- ③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,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%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
  - ④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☞ 홈페이지 (www.hanwhawm.com), 금융투자협회 (dis.kofia.or.kr), 금융감독원 (www.fss.or.kr)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 연금저축 적립금 수령방식에 따른 과세 안내(예시)

## 1.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

(1) 고객님께서 연금저축계좌에 5년 이상\*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, 적립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\*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

연간 최대 수령 가능금액 :	$\frac{\text{연금저축의 평가액}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)} \times \frac{120}{100}$
-----------------	--

※ 상기 산식에 따른 연간 최대 수령 가능금액 이내에서 수령하여야 연금소득세(5.5 ~ 3.3%)로 과세되며, 초과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(16.5%)로 과세됩니다.

(예시) 연금저축 평가액 : 4,000만원, 올해 연금수령연차 1년차인 경우  
올해 연금 최대 수령가능금액 : 480만원 (=4,000만원 ÷ 10 × 120%)  
☞ 올해 480만원까지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세를, 초과액은 기타소득세를 부과

(2)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아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\*됩니다.

\*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

연금소득세율				이연퇴직소득세율		
연령	70세 미만	70세 이상 80세 미만	80세 이상	수령 연차	10년 이하	10년 초과
세율	5.5%	4.4%	3.3%	세율	퇴직소득세의 70%	퇴직소득세의 60%

(3) 고객님께서 다른 연금계좌(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限)를 포함하여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
## 2.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

고객님께서 ‘연금 형태’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,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(16.5%)로 과세\*됩니다.

\* 이연퇴직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(6~42%)로 과세

3. 기타 사항 :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였던 금액은 인출(연금 또는 일시금) 형태와 상관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.